

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
(제15조제17항 관련)

<p>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(영어본)</p>	<p>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(customs authorisation No ...¹⁾) declares that,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, these products are of ...²⁾ preferential origin.</p> <p>.....³⁾ (Place and date)</p> <p>.....⁴⁾ (Signature of the exporter,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)</p>
<p>작성방법</p>	<p>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. 다만,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국문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.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. 2)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. 3)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. 다만,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 4)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, 서명을 합니다. 다만,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5)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-가에 따라 별표 15의3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"Derogation - Annex II (a) of Protocol"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.
<p>국문본</p>	<p>이 서류(세관인증번호...¹⁾)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,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이 제품은...²⁾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.</p>